

불참자처리세척 위반 경고장 (1,2)차

발부일자	2023년 10월 27일					
발부대상	지역구 소 속	1지역구 특수생산 열처리반	성 명	허석승	직책	조합원
경고적용	불참자처리세칙	제5조 (처리대상) 지회 회의 및 지회 회의체에서 결정된 교육과 각종 집회 및 쟁의행위 시 무단으로 불참한 자를 처리 대상으로 하며 행동지침 사항을 위반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며, 쟁의행위시와 일상기간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제6조 (처리방법) 1. 불참횟수에 따라 지회장이 처리하고 회의체에 보고한다. 1) 5회(쟁의시4회) 불참 시 : 1차 경고장 발부 2) 7회(쟁의시5회) 불참 시 : 2차 경고장 발부 지회유인물(지회게시판, 홈페이지포함) (명단공개) 3) 9회(쟁의시6회) 불참 시 : 사유서 제출 및 지회에서 제공하는 선물, 경조비혜택과 피선거권을 1년간 제한한다. 4) 12회(쟁의시7회) 불참 시 : 지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정권이상의 징계로 처리한다. 2. 출석 확인 및 선별에 대한 권한은 지회장이 지명 한 자에게 있고 총괄은 지회장이 한다. 3. 제재조치를 당한 조합원이 제재결정이 통보된 날 로부터 7일 이내에 본인의 입장을 서면으로 지회에 제출 할 경우 지회운영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3'임투 쟁대위 투쟁지침 1호	불참자 처리세칙 6조에 의거하며 특별결의 한다. <u>2023년 10월 10일 부터 잔업 및 특근을 전면 거부한다.</u> ▶ 잔업 1회 실시 → 불참 1회 적용 ▶ 특근 1회 실시 → 불참 2회 적용				
불참내용	지침불참	① 10/10 잔업 거부 ② 10/12 잔업 거부 ③ 10/13 잔업 거부 ④ 10/14 특근 거부 불참 2회 적용				
		불참 횟수 : 5회 (쟁의시 5회 포함)				
상기 조합원은 현대위아지회에서 불참자처리세칙 제6조 1항 1,2호에 의거하여 경고장 (1,2차)을 발부하며 지회 유인물, 지회 게시판, 지회 홈페이지에 명단 공개함.						



불참자처리세칙 위반 경고장 (1,2)차

발부일자	2023년 10월 27일					
발부대상	지역구 소 속	7지역구 구동생산 액슬가공1반	성 명	전성용	직책	조합원
경고적용	불참자처리세칙	제5조 (처리대상) 지회 회의 및 지회 회의체에서 결정된 교육과 각종 집회 및 쟁의행위 시 무단으로 불참한 자를 처리 대상으로 하 며 행동지침 사항을 위반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며, 쟁의행위시와 일상기간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제6조 (처리방법) 1. 불참횟수에 따라 지회장이 처리하고 회의체에 보고한다. 1) 5회(쟁의시4회) 불참 시 : 1차 경고장 발부 2) 7회(쟁의시5회) 불참 시 : 2차 경고장 발부 지회유인물(지회게시판, 홈페이지포함) (명단공개) 3) 9회(쟁의시6회) 불참 시 : 사유서 제출 및 지회에서 제공하는 선물, 경조비혜택과 피선거권을 1년간 제한한다. 4) 12회(쟁의시7회) 불참 시 : 지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정권이상의 징계로 처리한다. 2. 출석 확인 및 선별에 대한 권한은 지회장이 지명 한 자에게 있고 총괄은 지회장이 한다. 3. 제재조치를 당한 조합원이 제재결정이 통보된 날 로부터 7일 이내에 본인의 입장을 서면으로 지회에 제출 할 경우 지회운영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3'임투 쟁대위 투쟁지침 1호	불참자 처리세칙 6조에 의거하며 특별결의 한다. <u>2023년 10월 10일 부터 잔업 및 특근을 전면 거부한다.</u> ▶ 잔업 1회 실시 → 불참 1회 적용 ▶ 특근 1회 실시 → 불참 2회 적용				
불참내용	지침불참	① 6/5 23'단체교섭 요구안 설명회 ② 6/23 상반기 조합원 교육 ③ 9/18 23'임투 중식 결의대회 ④ 10/10 잔업 거부 ⑤ 10/11 잔업 거부 ⑥ 10/12 잔업 거부 ⑦ 10/13 잔업 거부				
		불참 횟수 : 7회 (쟁의시 5회 포함)				
상기 조합원은 현대위아지회에서 불참자처리세칙 제6조 1항 1,2호에 의거하여 경고장 (1,2차)을 발부하며 지회 유인물, 지회 게시판, 지회 홈페이지에 명단 공개함.						



불참자처리세척 위반 경고장 (1,2)차

발부일자	2023년 10월 27일					
발부대상	지역구 소 속	8지역구 구동생산부	성 명	정도식	직책	조합원
경고적용	불참자처리세칙	제5조 (처리대상) 지회 회의 및 지회 회의체에서 결정된 교육과 각종 집회 및 쟁의행위 시 무단으로 불참한 자를 처리 대상으로 하며 행동지침 사항을 위반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며, 쟁의행위시와 일상기간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제6조 (처리방법) 1. 불참횟수에 따라 지회장이 처리하고 회의체에 보고한다. 1) 5회(쟁의시4회) 불참 시 : 1차 경고장 발부 2) 7회(쟁의시5회) 불참 시 : 2차 경고장 발부 지회유인물(지회게시판, 홈페이지포함) (명단공개) 3) 9회(쟁의시6회) 불참 시 : 사유서 제출 및 지회에서 제공하는 선물, 경조비혜택과 피선거권을 1년간 제한한다. 4) 12회(쟁의시7회) 불참 시 : 지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정권이상의 징계로 처리한다. 2. 출석 확인 및 선별에 대한 권한은 지회장이 지명 한 자에게 있고 총괄은 지회장이 한다. 3. 제재조치를 당한 조합원이 제재결정이 통보된 날 로부터 7일 이내에 본인의 입장을 서면으로 지회에 제출 할 경우 지회운영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3'임투 쟁대위 투쟁지침 1호	불참자 처리세칙 6조에 의거하며 특별결의 한다. <u>2023년 10월 10일 부터 잔업 및 특근을 전면 거부한다.</u> ▶ 잔업 1회 실시 → 불참 1회 적용 ▶ 특근 1회 실시 → 불참 2회 적용				
불참내용	지침불참	① 6/5 23'단체교섭 요구안 설명회 ② 6/15 23'임투 출정식 ③ 6/23 상반기 조합원 교육 ④ 9/18 23'임투 중식 결의대회 ⑤ 10/10 잔업 거부 ⑥ 10/11 잔업 거부 ⑦ 10/12 잔업 거부 ⑧ 10/13 잔업 거부				
		불참 횟수 : 8회 (쟁의시 5회 포함)				
상기 조합원은 현대위아지회에서 불참자처리세칙 제6조 1항 1,2호에 의거하여 경고장 (1,2차)을 발부하며 지회 유인물, 지회 게시판, 지회 홈페이지에 명단 공개함.						



불참자처리세칙 위반 경고장 (1,2)차

발부일자	2023년 10월 27일					
발부대상	지역구 소 속	9지역구 구동생산 액슬열처리반	성 명	윤종국	직책	조합원
경고적용	불참자처리세칙	제5조 (처리대상) 지회 회의 및 지회 회의체에서 결정된 교육과 각종 집회 및 쟁의행위 시 무단으로 불참한 자를 처리 대상으로 하며 행동지침 사항을 위반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며, 쟁의행위시와 일상기간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제6조 (처리방법) 1. 불참횟수에 따라 지회장이 처리하고 회의체에 보고한다. 1) 5회(쟁의시4회) 불참 시 : 1차 경고장 발부 2) 7회(쟁의시5회) 불참 시 : 2차 경고장 발부 지회유인물(지회게시판, 홈페이지포함) (명단공개) 3) 9회(쟁의시6회) 불참 시 : 사유서 제출 및 지회에서 제공하는 선물, 경조비혜택과 피선거권을 1년간 제한한다. 4) 12회(쟁의시7회) 불참 시 : 지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정권이상의 징계로 처리한다. 2. 출석 확인 및 선별에 대한 권한은 지회장이 지명 한 자에게 있고 총괄은 지회장이 한다. 3. 제재조치를 당한 조합원이 제재결정이 통보된 날 로부터 7일 이내에 본인의 입장을 서면으로 지회에 제출 할 경우 지회운영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3'임투 쟁대위 투쟁지침 1호	불참자 처리세칙 6조에 의거하며 특별결의 한다. <u>2023년 10월 10일 부터 잔업 및 특근을 전면 거부한다.</u> ▶ 잔업 1회 실시 → 불참 1회 적용 ▶ 특근 1회 실시 → 불참 2회 적용				
불참내용	지침불참	① 6/5 23'단체교섭 요구안 설명회 ② 6/15 23'임투 출정식 ③ 6/23 상반기 조합원 교육 ④ 10/10 잔업 거부 ⑤ 10/11 잔업 거부 ⑥ 10/12 잔업 거부 ⑦ 10/13 잔업 거부				
		불참 횟수 : 7회 (쟁의시 4회 포함)				
상기 조합원은 현대위아지회에서 불참자처리세칙 제6조 1항 1,2호에 의거하여 경고장 (1,2차)을 발부하며 지회 유인물, 지회 게시판, 지회 홈페이지에 명단 공개함.						



불참자처리세칙 위반 경고장 (1,2)차

발부일자	2023년 10월 27일					
발부대상	지역구 소 속	9지역구 구동생산 액슬열처리반	성 명	이상식	직책	조합원
경고적용	불참자처리세칙	제5조 (처리대상) 지회 회의 및 지회 회의체에서 결정된 교육과 각종 집회 및 쟁의행위 시 무단으로 불참한 자를 처리 대상으로 하며 행동지침 사항을 위반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며, 쟁의행위시와 일상기간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제6조 (처리방법) 1. 불참횟수에 따라 지회장이 처리하고 회의체에 보고한다. 1) 5회(쟁의시4회) 불참 시 : 1차 경고장 발부 2) 7회(쟁의시5회) 불참 시 : 2차 경고장 발부 지회유인물(지회게시판, 홈페이지포함) (명단공개) 3) 9회(쟁의시6회) 불참 시 : 사유서 제출 및 지회에서 제공하는 선물, 경조비혜택과 피선거권을 1년간 제한한다. 4) 12회(쟁의시7회) 불참 시 : 지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정권이상의 징계로 처리한다. 2. 출석 확인 및 선별에 대한 권한은 지회장이 지명 한 자에게 있고 총괄은 지회장이 한다. 3. 제재조치를 당한 조합원이 제재결정이 통보된 날 로부터 7일 이내에 본인의 입장을 서면으로 지회에 제출 할 경우 지회운영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3'임투 쟁대위 투쟁지침 1호	불참자 처리세칙 6조에 의거하며 특별결의 한다. <u>2023년 10월 10일 부터 잔업 및 특근을 전면 거부한다.</u> ▶ 잔업 1회 실시 → 불참 1회 적용 ▶ 특근 1회 실시 → 불참 2회 적용				
불참내용	지침불참	① 6/5 23'단체교섭 요구안 설명회 ② 6/15 23'임투 출정식 ③ 6/23 상반기 조합원 교육 ④ 9/18 23'임투 중식 결의대회 ⑤ 10/11 잔업 거부 ⑥ 10/12 잔업 거부 ⑦ 10/13 잔업 거부				
		불참 횟수 : 7회 (쟁의시 4회 포함)				
상기 조합원은 현대위아지회에서 불참자처리세칙 제6조 1항 1,2호에 의거하여 경고장 (1,2차)을 발부하며 지회 유인물, 지회 게시판, 지회 홈페이지에 명단 공개함.						

현대위아지회 지회장 정 광 석



불참자처리세칙 위반 경고장 (1,2)차

발부일자	2023년 10월 27일					
발부대상	지역구 소 속	9지역구 구동생산 액슬열처리반	성 명	정주원	직책	조합원
경고적용	불참자처리세칙	제5조 (처리대상) 지회 회의 및 지회 회의체에서 결정된 교육과 각종 집회 및 쟁의행위 시 무단으로 불참한 자를 처리 대상으로 하며 행동지침 사항을 위반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며, 쟁의행위시와 일상기간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제6조 (처리방법) 1. 불참횟수에 따라 지회장이 처리하고 회의체에 보고한다. 1) 5회(쟁의시4회) 불참 시 : 1차 경고장 발부 2) 7회(쟁의시5회) 불참 시 : 2차 경고장 발부 지회유인물(지회게시판, 홈페이지포함) (명단공개) 3) 9회(쟁의시6회) 불참 시 : 사유서 제출 및 지회에서 제공하는 선물, 경조비혜택과 피선거권을 1년간 제한한다. 4) 12회(쟁의시7회) 불참 시 : 지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정권이상의 징계로 처리한다. 2. 출석 확인 및 선별에 대한 권한은 지회장이 지명 한 자에게 있고 총괄은 지회장이 한다. 3. 제재조치를 당한 조합원이 제재결정이 통보된 날 로부터 7일 이내에 본인의 입장을 서면으로 지회에 제출 할 경우 지회운영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3'임투 쟁대위 투쟁지침 1호	불참자 처리세칙 6조에 의거하며 특별결의 한다. <u>2023년 10월 10일 부터 잔업 및 특근을 전면 거부한다.</u> ▶ 잔업 1회 실시 → 불참 1회 적용 ▶ 특근 1회 실시 → 불참 2회 적용				
불참내용	지침불참	① 6/5 23'단체교섭 요구안 설명회 ② 6/15 23'임투 출정식 ③ 6/23 상반기 조합원 교육 ④ 10/10 잔업 거부 ⑤ 10/11 잔업 거부 ⑥ 10/12 잔업 거부 ⑦ 10/13 잔업 거부				
		불참 횟수 : 7회 (쟁의시 4회 포함)				
상기 조합원은 현대위아지회에서 불참자처리세칙 제6조 1항 1,2호에 의거하여 경고장 (1,2차)을 발부하며 지회 유인물, 지회 게시판, 지회 홈페이지에 명단 공개함.						



불참자처리세칙 위반 경고장 (1,2)차

발부일자	2023년 10월 27일					
발부대상	지역구 소 속	1지역구 특수생산 특수가공2반	성 명	한권수	직책	조합원
경고적용	불참자처리세칙	제5조 (처리대상) 지회 회의 및 지회 회의체에서 결정된 교육과 각종 집회 및 쟁의행위 시 무단으로 불참한 자를 처리 대상으로 하며 행동지침 사항을 위반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며, 쟁의행위시와 일상기간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제6조 (처리방법) 1. 불참횟수에 따라 지회장이 처리하고 회의체에 보고한다. 1) 5회(쟁의시4회) 불참 시 : 1차 경고장 발부 2) 7회(쟁의시5회) 불참 시 : 2차 경고장 발부 지회유인물(지회게시판, 홈페이지포함) (명단공개) 3) 9회(쟁의시6회) 불참 시 : 사유서 제출 및 지회에서 제공하는 선물, 경조비혜택과 피선거권을 1년간 제한한다. 4) 12회(쟁의시7회) 불참 시 : 지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정권이상의 징계로 처리한다. 2. 출석 확인 및 선별에 대한 권한은 지회장이 지명 한 자에게 있고 총괄은 지회장이 한다. 3. 제재조치를 당한 조합원이 제재결정이 통보된 날 로부터 7일 이내에 본인의 입장을 서면으로 지회에 제출 할 경우 지회운영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3'임투 쟁대위 투쟁지침 1호	불참자 처리세칙 6조에 의거하며 특별결의 한다. <u>2023년 10월 10일 부터 잔업 및 특근을 전면 거부한다.</u> ▶ 잔업 1회 실시 → 불참 1회 적용 ▶ 특근 1회 실시 → 불참 2회 적용				
불참내용	지침불참	① 10/10 잔업 거부 ② 10/11 잔업 거부 ③ 10/12 잔업 거부 ④ 10/13 잔업 거부 ⑤ 10/14 특근 거부 불참 2회 적용				
		불참 횟수 : 6회 (쟁의시 6회 포함)				
상기 조합원은 현대위아지회에서 불참자처리세칙 제6조 1항 1,2호에 의거하여 경고장 (1,2차)을 발부하며 지회 유인물, 지회 게시판, 지회 홈페이지에 명단 공개와 3호에 의거하여 사유서 제출 및 지회 제공 선물, 경조비 혜택, 피 선거권을 1년간 제한한다. ▶ 제한기간 : 2023. 10. 27. ~ 2024. 10. 26 (1년)						

현대위아지회 지회장 정 광 식



불참자처리세칙 위반 경고장 (1,2)차

발부일자	2023년 10월 27일					
발부대상	지역구 소 속	1지역구 특수생산 열처리반	성 명	이성은	직책	조합원
경고적용	불참자처리세칙	제5조 (처리대상) 지회 회의 및 지회 회의체에서 결정된 교육과 각종 집회 및 쟁의행위 시 무단으로 불참한 자를 처리 대상으로 하며 행동지침 사항을 위반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며, 쟁의행위시와 일상기간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제6조 (처리방법) 1. 불참횟수에 따라 지회장이 처리하고 회의체에 보고한다. 1) 5회(쟁의시4회) 불참 시 : 1차 경고장 발부 2) 7회(쟁의시5회) 불참 시 : 2차 경고장 발부 지회유인물(지회게시판, 홈페이지포함) (명단공개) 3) 9회(쟁의시6회) 불참 시 : 사유서 제출 및 지회에서 제공하는 선물, 경조비혜택과 피선거권을 1년간 제한한다. 4) 12회(쟁의시7회) 불참 시 : 지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정권이상의 징계로 처리한다. 2. 출석 확인 및 선별에 대한 권한은 지회장이 지명 한 자에게 있고 총괄은 지회장이 한다. 3. 제재조치를 당한 조합원이 제재결정이 통보된 날 로부터 7일 이내에 본인의 입장을 서면으로 지회에 제출 할 경우 지회운영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3'임투 쟁대위 투쟁지침 1호	불참자 처리세칙 6조에 의거하며 특별결의 한다. <u>2023년 10월 10일 부터 잔업 및 특근을 전면 거부한다.</u> ▶ 잔업 1회 실시 → 불참 1회 적용 ▶ 특근 1회 실시 → 불참 2회 적용				
불참내용	지침불참	① 10/10 잔업 거부 ② 10/11 잔업 거부 ③ 10/12 잔업 거부 ④ 10/13 잔업 거부 ⑤ 10/14 특근 거부 불참 2회 적용				
		불참 횟수 : 6회 (쟁의시 6회 포함)				
상기 조합원은 현대위아지회에서 불참자처리세칙 제6조 1항 2호에 의거하여 경고장 (1,2차)을 발부하며 지회 유인물, 지회 게시판, 지회 홈페이지에 명단 공개와 3호에 의거하여 사유서 제출 및 지회 제공 선물, 경조비 혜택, 피 선거권을 1년간 제한한다. ▶ 제한기간 : 2023. 10. 27. ~ 2024. 10. 26 (1년)						

현대위아지회 지회장 정 광 석



불참자처리세칙 위반 경고장 (1,2)차

발부일자	2023년 10월 27일					
발부대상	지역구 소 속	2지역구 특수생산 보전반	성 명	홍종일	직책	조합원
경고적용	불참자처리세칙	제5조 (처리대상) 지회 회의 및 지회 회의체에서 결정된 교육과 각종 집회 및 쟁의행위 시 무단으로 불참한 자를 처리 대상으로 하며 행동지침 사항을 위반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며, 쟁의행위시와 일상기간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제6조 (처리방법) 1. 불참횟수에 따라 지회장이 처리하고 회의체에 보고한다. 1) 5회(쟁의시4회) 불참 시 : 1차 경고장 발부 2) 7회(쟁의시5회) 불참 시 : 2차 경고장 발부 지회유인물(지회게시판, 홈페이지포함) (명단공개) 3) 9회(쟁의시6회) 불참 시 : 사유서 제출 및 지회에서 제공하는 선물, 경조비혜택과 피선거권을 1년간 제한한다. 4) 12회(쟁의시7회) 불참 시 : 지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정권이상의 징계로 처리한다. 2. 출석 확인 및 선별에 대한 권한은 지회장이 지명 한 자에게 있고 총괄은 지회장이 한다. 3. 제재조치를 당한 조합원이 제재결정이 통보된 날 로부터 7일 이내에 본인의 입장을 서면으로 지회에 제출 할 경우 지회운영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3'임투 쟁대위 투쟁지침 1호	불참자 처리세칙 6조에 의거하며 특별결의 한다. <u>2023년 10월 10일 부터 잔업 및 특근을 전면 거부한다.</u> ▶ 잔업 1회 실시 → 불참 1회 적용 ▶ 특근 1회 실시 → 불참 2회 적용				
불참내용	지침불참	① 10/10 잔업 거부 ② 10/11 잔업 거부 ③ 10/12 잔업 거부 ④ 10/13 잔업 거부 ⑤ 10/14 특근 거부 불참 2회 적용				
		불참 횟수 : 6회 (쟁의시 6회 포함)				
상기 조합원은 현대위아지회에서 불참자처리세칙 제6조 1항 2호에 의거하여 경고장 (1,2차)을 발부하며 지회 유인물, 지회 게시판, 지회 홈페이지에 명단 공개와 3호에 의거하여 사유서 제출 및 지회 제공 선물, 경조비 혜택, 피 선거권을 1년간 제한한다. ▶ 제한기간 : 2023. 10. 27. ~ 2024. 10. 26 (1년)						

현대위아지회 지회장 정 광 식



불참자처리세척 위반 경고장 (1,2)차

발부일자	2023년 10월 27일					
발부대상	지역구 소 속	3지역구 주조생산 주조반	성 명	김만기	직책	조합원
경고적용	불참자처리세칙	제5조 (처리대상) 지회 회의 및 지회 회의체에서 결정된 교육과 각종 집회 및 쟁의행위 시 무단으로 불참한 자를 처리 대상으로 하며 행동지침 사항을 위반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며, 쟁의행위시와 일상기간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제6조 (처리방법) 1. 불참횟수에 따라 지회장이 처리하고 회의체에 보고한다. 1) 5회(쟁의시4회) 불참 시 : 1차 경고장 발부 2) 7회(쟁의시5회) 불참 시 : 2차 경고장 발부 지회유인물(지회게시판, 홈페이지포함) (명단공개) 3) 9회(쟁의시6회) 불참 시 : 사유서 제출 및 지회에서 제공하는 선물, 경조비혜택과 피선거권을 1년간 제한한다. 4) 12회(쟁의시7회) 불참 시 : 지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정권이상의 징계로 처리한다. 2. 출석 확인 및 선별에 대한 권한은 지회장이 지명 한 자에게 있고 총괄은 지회장이 한다. 3. 제재조치를 당한 조합원이 제재결정이 통보된 날 로부터 7일 이내에 본인의 입장을 서면으로 지회에 제출 할 경우 지회운영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3'임투 쟁대위 투쟁지침 1호	불참자 처리세칙 6조에 의거하며 특별결의 한다. <u>2023년 10월 10일 부터 잔업 및 특근을 전면 거부한다.</u> ▶ 잔업 1회 실시 → 불참 1회 적용 ▶ 특근 1회 실시 → 불참 2회 적용				
불참내용	지침불참	① 6/5 23'단체교섭 요구안 설명회 ② 6/15 23'임투 출정식 ③ 6/23 상반기 조합원 교육 ④ 10/10 잔업 거부 ⑤ 10/11 잔업 거부 ⑥ 10/12 잔업 거부 ⑦ 10/13 잔업 거부 ⑧ 10/14 특근 거부 불참 2회 적용				
		불참 횟수 : 9회 (쟁의시 6회 포함)				
상기 조합원은 현대위아지회에서 불참자처리세칙 제6조 1항 2호에 의거하여 경고장 (1,2차)을 발부하며 지회 유인물, 지회 게시판, 지회 홈페이지에 명단 공개와 3호에 의거하여 사유서 제출 및 지회 제공 선물, 경조비 혜택, 피 선거권을 1년간 제한한다. ▶ 제한기간 : 2023. 10. 27. ~ 2024. 10. 26 (1년)						



불참자처리세척 위반 경고장 (1,2)차

발부일자	2023년 10월 27일					
발부대상	지역구 소 속	6지역구 차부보전 보전1반	성 명	정민수	직책	조합원
경고적용	불참자처리세칙	제5조 (처리대상) 지회 회의 및 지회 회의체에서 결정된 교육과 각종 집회 및 쟁의행위 시 무단으로 불참한 자를 처리 대상으로 하며 행동지침 사항을 위반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며, 쟁의행위시와 일상기간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제6조 (처리방법) 1. 불참횟수에 따라 지회장이 처리하고 회의체에 보고한다. 1) 5회(쟁의시4회) 불참 시 : 1차 경고장 발부 2) 7회(쟁의시5회) 불참 시 : 2차 경고장 발부 지회유인물(지회게시판, 홈페이지포함) (명단공개) 3) 9회(쟁의시6회) 불참 시 : 사유서 제출 및 지회에서 제공하는 선물, 경조비혜택과 피선거권을 1년간 제한한다. 4) 12회(쟁의시7회) 불참 시 : 지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정권이상의 징계로 처리한다. 2. 출석 확인 및 선별에 대한 권한은 지회장이 지명 한 자에게 있고 총괄은 지회장이 한다. 3. 제재조치를 당한 조합원이 제재결정이 통보된 날 로부터 7일 이내에 본인의 입장을 서면으로 지회에 제출 할 경우 지회운영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3'임투 쟁대위 투쟁지침 1호	불참자 처리세칙 6조에 의거하며 특별결의 한다. <u>2023년 10월 10일 부터 잔업 및 특근을 전면 거부한다.</u> ▶ 잔업 1회 실시 → 불참 1회 적용 ▶ 특근 1회 실시 → 불참 2회 적용				
불참내용	지침불참	① 6/5 23'단체교섭 요구안 설명회 ② 6/15 23'임투 출정식 ③ 6/23 상반기 조합원 교육 ④ 9/18 23'임투 중식 결의대회 ⑤ 10/11 잔업 거부 ⑥ 10/12 잔업 거부 ⑦ 10/13 잔업 거부 ⑧ 10/14 특근 거부 불참 2회 적용				
		불참 횟수 : 9회 (쟁의시 6회 포함)				
상기 조합원은 현대위아지회에서 불참자처리세칙 제6조 1항 2호에 의거하여 경고장 (1,2차)을 발부하며 지회 유인물, 지회 게시판, 지회 홈페이지에 명단 공개와 3호에 의거하여 사유서 제출 및 지회 제공 선물, 경조비 혜택, 피 선거권을 1년간 제한한다. ▶ 제한기간 : 2023. 10. 27. ~ 2024. 10. 26 (1년)						



불참자처리세칙 위반 경고장 (1,2)차

발부일자	2023년 10월 27일					
발부대상	지역구 소 속	6지역구 차부보전 보전1반	성 명	성해영	직책	조합원
경고적용	불참자처리세칙	제5조 (처리대상) 지회 회의 및 지회 회의체에서 결정된 교육과 각종 집회 및 쟁의행위 시 무단으로 불참한 자를 처리 대상으로 하며 행동지침 사항을 위반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며, 쟁의행위시와 일상기간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제6조 (처리방법) 1. 불참횟수에 따라 지회장이 처리하고 회의체에 보고한다. 1) 5회(쟁의시4회) 불참 시 : 1차 경고장 발부 2) 7회(쟁의시5회) 불참 시 : 2차 경고장 발부 지회유인물(지회게시판, 홈페이지포함) (명단공개) 3) 9회(쟁의시6회) 불참 시 : 사유서 제출 및 지회에서 제공하는 선물, 경조비혜택과 피선거권을 1년간 제한한다. 4) 12회(쟁의시7회) 불참 시 : 지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정권이상의 징계로 처리한다. 2. 출석 확인 및 선별에 대한 권한은 지회장이 지명 한 자에게 있고 총괄은 지회장이 한다. 3. 제재조치를 당한 조합원이 제재결정이 통보된 날 로부터 7일 이내에 본인의 입장을 서면으로 지회에 제출 할 경우 지회운영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3'임투 쟁대위 투쟁지침 1호	불참자 처리세칙 6조에 의거하며 특별결의 한다. <u>2023년 10월 10일 부터 잔업 및 특근을 전면 거부한다.</u> ▶ 잔업 1회 실시 → 불참 1회 적용 ▶ 특근 1회 실시 → 불참 2회 적용				
불참내용	지침불참	① 9/18 23'임투 중식 결의대회 ② 10/10 잔업 거부 ③ 10/11 잔업 거부 ④ 10/12 잔업 거부 ⑤ 10/14 특근 거부 불참 2회 적용				
		불참 횟수 : 6회 (쟁의시 6회 포함)				
상기 조합원은 현대위아지회에서 불참자처리세칙 제6조 1항 2호에 의거하여 경고장 (1,2차)을 발부하며 지회 유인물, 지회 게시판, 지회 홈페이지에 명단 공개와 3호에 의거하여 사유서 제출 및 지회 제공 선물, 경조비 혜택, 피 선거권을 1년간 제한한다. ▶ 제한기간 : 2023. 10. 27. ~ 2024. 10. 26 (1년)						



불참자처리세칙 위반 경고장 (1,2)차

발부일자	2023년 10월 27일					
발부대상	지역구 소 속	12지역구 시설동력 영선반	성 명	김용진	직책	조합원
경고적용	불참자처리세칙	제5조 (처리대상) 지회 회의 및 지회 회의체에서 결정된 교육과 각종 집회 및 쟁의행위 시 무단으로 불참한 자를 처리 대상으로 하며 행동지침 사항을 위반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며, 쟁의행위시와 일상기간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제6조 (처리방법) 1. 불참횟수에 따라 지회장이 처리하고 회의체에 보고한다. 1) 5회(쟁의시4회) 불참 시 : 1차 경고장 발부 2) 7회(쟁의시5회) 불참 시 : 2차 경고장 발부 지회유인물(지회게시판, 홈페이지포함) (명단공개) 3) 9회(쟁의시6회) 불참 시 : 사유서 제출 및 지회에서 제공하는 선물, 경조비혜택과 피선거권을 1년간 제한한다. 4) 12회(쟁의시7회) 불참 시 : 지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정권이상의 징계로 처리한다. 2. 출석 확인 및 선별에 대한 권한은 지회장이 지명 한 자에게 있고 총괄은 지회장이 한다. 3. 제재조치를 당한 조합원이 제재결정이 통보된 날 로부터 7일 이내에 본인의 입장을 서면으로 지회에 제출 할 경우 지회운영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3'임투 쟁대위 투쟁지침 1호	불참자 처리세칙 6조에 의거하며 특별결의 한다. <u>2023년 10월 10일 부터 잔업 및 특근을 전면 거부한다.</u> ▶ 잔업 1회 실시 → 불참 1회 적용 ▶ 특근 1회 실시 → 불참 2회 적용				
불참내용	지침불참	① 6/5 23'단체교섭 요구안 설명회 ② 6/23 상반기 조합원 교육 ③ 10/10 잔업 거부 ④ 10/11 잔업 거부 ⑤ 10/12 잔업 거부 ⑥ 10/13 잔업 거부 ⑦ 10/14 특근 거부 불참 2회 적용				
		불참 횟수 : 8회 (쟁의시 6회 포함)				
상기 조합원은 현대위아지회에서 불참자처리세칙 제6조 1항 2호에 의거하여 경고장 (1,2차)을 발부하며 지회 유인물, 지회 게시판, 지회 홈페이지에 명단 공개와 3호에 의거하여 사유서 제출 및 지회 제공 선물, 경조비 혜택, 피 선거권을 1년간 제한한다. ▶ 제한기간 : 2023. 10. 27. ~ 2024. 10. 26 (1년)						

현대위아지회 지회장 정 광 식



불참자처리세칙 위반 경고장 (1,2)차

발부일자	2023년 10월 27일					
발부대상	지역구 소 속	13지역구 구동생산 PTU가공1반	성 명	허종렬	직책	조합원
경고적용	불참자처리세칙	제5조 (처리대상) 지회 회의 및 지회 회의체에서 결정된 교육과 각종 집회 및 쟁의행위 시 무단으로 불참한 자를 처리 대상으로 하며 행동지침 사항을 위반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며, 쟁의행위시와 일상기간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제6조 (처리방법) 1. 불참횟수에 따라 지회장이 처리하고 회의체에 보고한다. 1) 5회(쟁의시4회) 불참 시 : 1차 경고장 발부 2) 7회(쟁의시5회) 불참 시 : 2차 경고장 발부 지회유인물(지회게시판, 홈페이지포함) (명단공개) 3) 9회(쟁의시6회) 불참 시 : 사유서 제출 및 지회에서 제공하는 선물, 경조비혜택과 피선거권을 1년간 제한한다. 4) 12회(쟁의시7회) 불참 시 : 지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정권이상의 징계로 처리한다. 2. 출석 확인 및 선별에 대한 권한은 지회장이 지명 한 자에게 있고 총괄은 지회장이 한다. 3. 제재조치를 당한 조합원이 제재결정이 통보된 날 로부터 7일 이내에 본인의 입장을 서면으로 지회에 제출 할 경우 지회운영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3'임투 쟁대위 투쟁지침 1호	불참자 처리세칙 6조에 의거하며 특별결의 한다. <u>2023년 10월 10일 부터 잔업 및 특근을 전면 거부한다.</u> ▶ 잔업 1회 실시 → 불참 1회 적용 ▶ 특근 1회 실시 → 불참 2회 적용				
불참내용	지침불참	① 6/15 23'임투 출정식 ② 10/10 잔업 거부 ③ 10/11 잔업 거부 ④ 10/12 잔업 거부 ⑤ 10/13 잔업 거부 ⑥ 10/14 특근 거부 불참 2회 적용				
		불참 횟수 : 7회 (쟁의시 6회 포함)				
상기 조합원은 현대위아지회에서 불참자처리세칙 제6조 1항 2호에 의거하여 경고장 (1,2차)을 발부하며 지회 유인물, 지회 게시판, 지회 홈페이지에 명단 공개와 3호에 의거하여 사유서 제출 및 지회 제공 선물, 경조비 혜택, 피 선거권을 1년간 제한한다. ▶ 제한기간 : 2023. 10. 27. ~ 2024. 10. 26 (1년)						

현대위아지회 지회장 정 광 식



불참자처리세칙 위반 경고장 (1,2)차

발부일자	2023년 10월 27일					
발부대상	지역구 소 속	14지역구 차부생관 자재2반	성 명	류원근	직책	조합원
경고적용	불참자처리세칙	제5조 (처리대상) 지회 회의 및 지회 회의체에서 결정된 교육과 각종 집회 및 쟁의행위 시 무단으로 불참한 자를 처리 대상으로 하며 행동지침 사항을 위반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며, 쟁의행위시와 일상기간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제6조 (처리방법) 1. 불참횟수에 따라 지회장이 처리하고 회의체에 보고한다. 1) 5회(쟁의시4회) 불참 시 : 1차 경고장 발부 2) 7회(쟁의시5회) 불참 시 : 2차 경고장 발부 지회유인물(지회게시판, 홈페이지포함) (명단공개) 3) 9회(쟁의시6회) 불참 시 : 사유서 제출 및 지회에서 제공하는 선물, 경조비혜택과 피선거권을 1년간 제한한다. 4) 12회(쟁의시7회) 불참 시 : 지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정권이상의 징계로 처리한다. 2. 출석 확인 및 선별에 대한 권한은 지회장이 지명 한 자에게 있고 총괄은 지회장이 한다. 3. 제재조치를 당한 조합원이 제재결정이 통보된 날 로부터 7일 이내에 본인의 입장을 서면으로 지회에 제출 할 경우 지회운영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3'임투 쟁대위 투쟁지침 1호	불참자 처리세칙 6조에 의거하며 특별결의 한다. <u>2023년 10월 10일 부터 잔업 및 특근을 전면 거부한다.</u> ▶ 잔업 1회 실시 → 불참 1회 적용 ▶ 특근 1회 실시 → 불참 2회 적용				
불참내용	지침불참	① 10/10 잔업 거부 ② 10/11 잔업 거부 ③ 10/12 잔업 거부 ④ 10/13 잔업 거부 ⑤ 10/14 특근 거부 불참 2회 적용				
		불참 횟수 : 6회 (쟁의시 6회 포함)				
상기 조합원은 현대위아지회에서 불참자처리세칙 제6조 1항 2호에 의거하여 경고장 (1,2차)을 발부하며 지회 유인물, 지회 게시판, 지회 홈페이지에 명단 공개와 3호에 의거하여 사유서 제출 및 지회 제공 선물, 경조비 혜택, 피 선거권을 1년간 제한한다. ▶ 제한기간 : 2023. 10. 27. ~ 2024. 10. 26 (1년)						

현대위아지회 지회장 정 광 식



불참자처리세칙 위반 경고장 (1,2)차

발부일자	2023년 10월 27일					
발부대상	지역구 소 속	15지역구 구동생산 PTU조립1반	성 명	배제현	직책	조합원
경고적용	불참자처리세칙	제5조 (처리대상) 지회 회의 및 지회 회의체에서 결정된 교육과 각종 집회 및 쟁의행위 시 무단으로 불참한 자를 처리 대상으로 하며 행동지침 사항을 위반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며, 쟁의행위시와 일상기간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제6조 (처리방법) 1. 불참횟수에 따라 지회장이 처리하고 회의체에 보고한다. 1) 5회(쟁의시4회) 불참 시 : 1차 경고장 발부 2) 7회(쟁의시5회) 불참 시 : 2차 경고장 발부 지회유인물(지회게시판, 홈페이지포함) (명단공개) 3) 9회(쟁의시6회) 불참 시 : 사유서 제출 및 지회에서 제공하는 선물, 경조비혜택과 피선거권을 1년간 제한한다. 4) 12회(쟁의시7회) 불참 시 : 지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정권이상의 징계로 처리한다. 2. 출석 확인 및 선별에 대한 권한은 지회장이 지명 한 자에게 있고 총괄은 지회장이 한다. 3. 제재조치를 당한 조합원이 제재결정이 통보된 날 로부터 7일 이내에 본인의 입장을 서면으로 지회에 제출 할 경우 지회운영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3'임투 쟁대위 투쟁지침 1호	불참자 처리세칙 6조에 의거하며 특별결의 한다. <u>2023년 10월 10일 부터 잔업 및 특근을 전면 거부한다.</u> ▶ 잔업 1회 실시 → 불참 1회 적용 ▶ 특근 1회 실시 → 불참 2회 적용				
불참내용	지침불참	① 10/10 잔업 거부 ② 10/11 잔업 거부 ③ 10/12 잔업 거부 ④ 10/13 잔업 거부 ⑤ 10/14 특근 거부 불참 2회 적용				
		불참 횟수 : 6회 (쟁의시 6회 포함)				
상기 조합원은 현대위아지회에서 불참자처리세칙 제6조 1항 2호에 의거하여 경고장 (1,2차)을 발부하며 지회 유인물, 지회 게시판, 지회 홈페이지에 명단 공개와 3호에 의거하여 사유서 제출 및 지회 제공 선물, 경조비 혜택, 피 선거권을 1년간 제한한다. ▶ 제한기간 : 2023. 10. 27. ~ 2024. 10. 26 (1년)						

현대위아지회 지회장 정 광 식



불참자처리세칙 위반 경고장 (1,2)차

발부일자	2023년 10월 27일					
발부대상	지역구 소 속	19지역구 차부생관 자재2반	성 명	김울엽	직책	조합원
경고적용	불참자처리세칙	제5조 (처리대상) 지회 회의 및 지회 회의체에서 결정된 교육과 각종 집회 및 쟁의행위 시 무단으로 불참한 자를 처리 대상으로 하며 행동지침 사항을 위반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며, 쟁의행위시와 일상기간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제6조 (처리방법) 1. 불참횟수에 따라 지회장이 처리하고 회의체에 보고한다. 1) 5회(쟁의시4회) 불참 시 : 1차 경고장 발부 2) 7회(쟁의시5회) 불참 시 : 2차 경고장 발부 지회유인물(지회게시판, 홈페이지포함) (명단공개) 3) 9회(쟁의시6회) 불참 시 : 사유서 제출 및 지회에서 제공하는 선물, 경조비혜택과 피선거권을 1년간 제한한다. 4) 12회(쟁의시7회) 불참 시 : 지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정권이상의 징계로 처리한다. 2. 출석 확인 및 선별에 대한 권한은 지회장이 지명 한 자에게 있고 총괄은 지회장이 한다. 3. 제재조치를 당한 조합원이 제재결정이 통보된 날 로부터 7일 이내에 본인의 입장을 서면으로 지회에 제출 할 경우 지회운영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3'임투 쟁대위 투쟁지침 1호	불참자 처리세칙 6조에 의거하며 특별결의 한다. <u>2023년 10월 10일 부터 잔업 및 특근을 전면 거부한다.</u> ▶ 잔업 1회 실시 → 불참 1회 적용 ▶ 특근 1회 실시 → 불참 2회 적용				
불참내용	지침불참	① 10/10 잔업 거부 ② 10/11 잔업 거부 ③ 10/12 잔업 거부 ④ 10/13 잔업 거부 ⑤ 10/14 특근 거부 불참 2회 적용				
		불참 횟수 : 6회 (쟁의시 6회 포함)				
상기 조합원은 현대위아지회에서 불참자처리세칙 제6조 1항 2호에 의거하여 경고장 (1,2차)을 발부하며 지회 유인물, 지회 게시판, 지회 홈페이지에 명단 공개와 3호에 의거하여 사유서 제출 및 지회 제공 선물, 경조비 혜택, 피 선거권을 1년간 제한한다. ▶ 제한기간 : 2023. 10. 27. ~ 2024. 10. 26 (1년)						

현대위아지회 지회장 정 광 식



불참자처리세칙 위반 경고장 (1,2)차

발부일자	2023년 10월 27일					
발부대상	지역구 소 속	23지역구 차부품관2 등속공정검사반	성 명	김찬현	직책	조합원
경고적용	불참자처리세칙	제5조 (처리대상) 지회 회의 및 지회 회의체에서 결정된 교육과 각종 집회 및 쟁의행위 시 무단으로 불참한 자를 처리 대상으로 하며 행동지침 사항을 위반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며, 쟁의행위시와 일상기간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제6조 (처리방법) 1. 불참횟수에 따라 지회장이 처리하고 회의체에 보고한다. 1) 5회(쟁의시4회) 불참 시 : 1차 경고장 발부 2) 7회(쟁의시5회) 불참 시 : 2차 경고장 발부 지회유인물(지회게시판, 홈페이지포함) (명단공개) 3) 9회(쟁의시6회) 불참 시 : 사유서 제출 및 지회에서 제공하는 선물, 경조비혜택과 피선거권을 1년간 제한한다. 4) 12회(쟁의시7회) 불참 시 : 지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정권이상의 징계로 처리한다. 2. 출석 확인 및 선별에 대한 권한은 지회장이 지명 한 자에게 있고 총괄은 지회장이 한다. 3. 제재조치를 당한 조합원이 제재결정이 통보된 날 로부터 7일 이내에 본인의 입장을 서면으로 지회에 제출 할 경우 지회운영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3'임투 쟁대위 투쟁지침 1호	불참자 처리세칙 6조에 의거하며 특별결의 한다. <u>2023년 10월 10일 부터 잔업 및 특근을 전면 거부한다.</u> ▶ 잔업 1회 실시 → 불참 1회 적용 ▶ 특근 1회 실시 → 불참 2회 적용				
불참내용	지침불참	① 10/10 잔업 거부 ② 10/11 잔업 거부 ③ 10/12 잔업 거부 ④ 10/13 잔업 거부 ⑤ 10/14 특근 거부 불참 2회 적용				
		불참 횟수 : 6회 (쟁의시 6회 포함)				
상기 조합원은 현대위아지회에서 불참자처리세칙 제6조 1항 2호에 의거하여 경고장 (1,2차)을 발부하며 지회 유인물, 지회 게시판, 지회 홈페이지에 명단 공개와 3호에 의거하여 사유서 제출 및 지회 제공 선물, 경조비 혜택, 피 선거권을 1년간 제한한다. ▶ 제한기간 : 2023. 10. 27. ~ 2024. 10. 26 (1년)						

현대위아지회 지회장 정 광 식



불참자처리세칙 위반 경고장 (1,2)차

발부일자	2023년 10월 27일					
발부대상	지역구 소 속	23지역구 엔진생산1부	성 명	배재열	직책	조합원
경고적용	불참자처리세칙	제5조 (처리대상) 지회 회의 및 지회 회의체에서 결정된 교육과 각종 집회 및 쟁의행위 시 무단으로 불참한 자를 처리 대상으로 하며 행동지침 사항을 위반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며, 쟁의행위시와 일상기간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제6조 (처리방법) 1. 불참횟수에 따라 지회장이 처리하고 회의체에 보고한다. 1) 5회(쟁의시4회) 불참 시 : 1차 경고장 발부 2) 7회(쟁의시5회) 불참 시 : 2차 경고장 발부 지회유인물(지회게시판, 홈페이지포함) (명단공개) 3) 9회(쟁의시6회) 불참 시 : 사유서 제출 및 지회에서 제공하는 선물, 경조비혜택과 피선거권을 1년간 제한한다. 4) 12회(쟁의시7회) 불참 시 : 지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정권이상의 징계로 처리한다. 2. 출석 확인 및 선별에 대한 권한은 지회장이 지명 한 자에게 있고 총괄은 지회장이 한다. 3. 제재조치를 당한 조합원이 제재결정이 통보된 날 로부터 7일 이내에 본인의 입장을 서면으로 지회에 제출 할 경우 지회운영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3'임투 쟁대위 투쟁지침 1호	불참자 처리세칙 6조에 의거하며 특별결의 한다. <u>2023년 10월 10일 부터 잔업 및 특근을 전면 거부한다.</u> ▶ 잔업 1회 실시 → 불참 1회 적용 ▶ 특근 1회 실시 → 불참 2회 적용				
불참내용	지침불참	① 10/10 잔업 거부 ② 10/11 잔업 거부 ③ 10/12 잔업 거부 ④ 10/13 잔업 거부 ⑤ 10/14 특근 거부 불참 2회 적용				
		불참 횟수 : 6회 (쟁의시 6회 포함)				
상기 조합원은 현대위아지회에서 불참자처리세칙 제6조 1항 2호에 의거하여 경고장 (1,2차)을 발부하며 지회 유인물, 지회 게시판, 지회 홈페이지에 명단 공개와 3호에 의거하여 사유서 제출 및 지회 제공 선물, 경조비 혜택, 피 선거권을 1년간 제한한다. ▶ 제한기간 : 2023. 10. 27. ~ 2024. 10. 26 (1년)						

현대위아지회 지회장 정 광 식



불참자처리세칙 위반 경고장 (1,2)차

발부일자	2023년 10월 27일					
발부대상	지역구 소 속	23지역구 엔진생산1 조립1반	성 명	정형규	직책	조합원
경고적용	불참자처리세칙	제5조 (처리대상) 지회 회의 및 지회 회의체에서 결정된 교육과 각종 집회 및 쟁의행위 시 무단으로 불참한 자를 처리 대상으로 하며 행동지침 사항을 위반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며, 쟁의행위시와 일상기간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제6조 (처리방법) 1. 불참횟수에 따라 지회장이 처리하고 회의체에 보고한다. 1) 5회(쟁의시4회) 불참 시 : 1차 경고장 발부 2) 7회(쟁의시5회) 불참 시 : 2차 경고장 발부 지회유인물(지회게시판, 홈페이지포함) (명단공개) 3) 9회(쟁의시6회) 불참 시 : 사유서 제출 및 지회에서 제공하는 선물, 경조비혜택과 피선거권을 1년간 제한한다. 4) 12회(쟁의시7회) 불참 시 : 지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정권이상의 징계로 처리한다. 2. 출석 확인 및 선별에 대한 권한은 지회장이 지명 한 자에게 있고 총괄은 지회장이 한다. 3. 제재조치를 당한 조합원이 제재결정이 통보된 날 로부터 7일 이내에 본인의 입장을 서면으로 지회에 제출 할 경우 지회운영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3'임투 쟁대위 투쟁지침 1호	불참자 처리세칙 6조에 의거하며 특별결의 한다. <u>2023년 10월 10일 부터 잔업 및 특근을 전면 거부한다.</u> ▶ 잔업 1회 실시 → 불참 1회 적용 ▶ 특근 1회 실시 → 불참 2회 적용				
불참내용	지침불참	① 10/10 잔업 거부 ② 10/11 잔업 거부 ③ 10/12 잔업 거부 ④ 10/13 잔업 거부 ⑤ 10/14 특근 거부 불참 2회 적용				
		불참 횟수 : 6회 (쟁의시 6회 포함)				
상기 조합원은 현대위아지회에서 불참자처리세칙 제6조 1항 2호에 의거하여 경고장 (1,2차)을 발부하며 지회 유인물, 지회 게시판, 지회 홈페이지에 명단 공개와 3호에 의거하여 사유서 제출 및 지회 제공 선물, 경조비 혜택, 피 선거권을 1년간 제한한다. ▶ 제한기간 : 2023. 10. 27. ~ 2024. 10. 26 (1년)						

현대위아지회 지회장 정 광 식



불참자처리세칙 위반 경고장 (1,2)차

발부일자	2023년 10월 27일					
발부대상	지역구 소 속	23지역구 엔진생산1 조립2반	성 명	장영환	직책	조합원
경고적용	불참자처리세칙	제5조 (처리대상) 지회 회의 및 지회 회의체에서 결정된 교육과 각종 집회 및 쟁의행위 시 무단으로 불참한 자를 처리 대상으로 하며 행동지침 사항을 위반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며, 쟁의행위시와 일상기간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제6조 (처리방법) 1. 불참횟수에 따라 지회장이 처리하고 회의체에 보고한다. 1) 5회(쟁의시4회) 불참 시 : 1차 경고장 발부 2) 7회(쟁의시5회) 불참 시 : 2차 경고장 발부 지회유인물(지회게시판, 홈페이지포함) (명단공개) 3) 9회(쟁의시6회) 불참 시 : 사유서 제출 및 지회에서 제공하는 선물, 경조비혜택과 피선거권을 1년간 제한한다. 4) 12회(쟁의시7회) 불참 시 : 지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정권이상의 징계로 처리한다. 2. 출석 확인 및 선별에 대한 권한은 지회장이 지명 한 자에게 있고 총괄은 지회장이 한다. 3. 제재조치를 당한 조합원이 제재결정이 통보된 날 로부터 7일 이내에 본인의 입장을 서면으로 지회에 제출 할 경우 지회운영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3'임투 쟁대위 투쟁지침 1호	불참자 처리세칙 6조에 의거하며 특별결의 한다. <u>2023년 10월 10일 부터 잔업 및 특근을 전면 거부한다.</u> ▶ 잔업 1회 실시 → 불참 1회 적용 ▶ 특근 1회 실시 → 불참 2회 적용				
불참내용	지침불참	① 10/10 잔업 거부 ② 10/11 잔업 거부 ③ 10/12 잔업 거부 ④ 10/13 잔업 거부 ⑤ 10/14 특근 거부 불참 2회 적용				
		불참 횟수 : 6회 (쟁의시 6회 포함)				
상기 조합원은 현대위아지회에서 불참자처리세칙 제6조 1항 2호에 의거하여 경고장 (1,2차)을 발부하며 지회 유인물, 지회 게시판, 지회 홈페이지에 명단 공개와 3호에 의거하여 사유서 제출 및 지회 제공 선물, 경조비 혜택, 피 선거권을 1년간 제한한다. ▶ 제한기간 : 2023. 10. 27. ~ 2024. 10. 26 (1년)						

현대위아지회 지회장 정 광 식



불참자처리세척 위반 경고장 (1,2)차

발부일자	2023년 10월 27일					
발부대상	지역구 소 속	5지역구 공작기계생산부	성 명	유창훈	직책	조합원
경고적용	불참자처리세칙	제5조 (처리대상) 지회 회의 및 지회 회의체에서 결정된 교육과 각종 집회 및 쟁의행위 시 무단으로 불참한 자를 처리 대상으로 하며 행동지침 사항을 위반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며, 쟁의행위시와 일상기간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제6조 (처리방법) 1. 불참횟수에 따라 지회장이 처리하고 회의체에 보고한다. 1) 5회(쟁의시4회) 불참 시 : 1차 경고장 발부 2) 7회(쟁의시5회) 불참 시 : 2차 경고장 발부 지회유인물(지회게시판, 홈페이지포함) (명단공개) 3) 9회(쟁의시6회) 불참 시 : 사유서 제출 및 지회에서 제공하는 선물, 경조비혜택과 피선거권을 1년간 제한한다. 4) 12회(쟁의시7회) 불참 시 : 지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정권이상의 징계로 처리한다. 2. 출석 확인 및 선별에 대한 권한은 지회장이 지명 한 자에게 있고 총괄은 지회장이 한다. 3. 제재조치를 당한 조합원이 제재결정이 통보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본인의 입장을 서면으로 지회에 제출 할 경우 지회운영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3'임투 쟁대위 투쟁지침 1호	불참자 처리세칙 6조에 의거하며 특별결의 한다. <u>2023년 10월 10일 부터 잔업 및 특근을 전면 거부한다.</u> ▶ 잔업 1회 실시 → 불참 1회 적용 ▶ 특근 1회 실시 → 불참 2회 적용				
불참내용	지침불참	① 6/15 23'임투 출정식 ② 9/18 23'임투 중식 결의대회 ③ 10/10 잔업 거부 ④ 10/11 잔업 거부 ⑤ 10/12 잔업 거부 ⑥ 10/13 잔업 거부 ⑦ 10/14 특근 거부 불참 2회 적용				
		불참 횟수 : 8회 (쟁의시 7회 포함)				
상기 조합원은 현대위아지회에서 불참자처리세칙 제6조 1항 2호에 의거하여 경고장 (1,2차)을 발부하며 지회 유인물, 지회 게시판, 지회 홈페이지에 명단 공개와 3호에 의거하여 사유서 제출 및 지회 제공 선물, 경조비 혜택, 피 선거권을 1년간 제한한다. ▶ 제한기간 : 2023. 10. 27. ~ 2024. 10. 26 (1년) 또한 4호에 의거하여 지부 운영위원회에 회부, 정권 이상의 징계로 처리한다.						



불참자처리세칙 위반 경고장 (1,2)차

발부일자	2023년 10월 27일					
발부대상	지역구 소 속	9지역구 차부생관 자재1반	성 명	손현중	직책	조합원
경고적용	불참자처리세칙	제5조 (처리대상) 지회 회의 및 지회 회의체에서 결정된 교육과 각종 집회 및 쟁의행위 시 무단으로 불참한 자를 처리 대상으로 하며 행동지침 사항을 위반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며, 쟁의행위시와 일상기간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제6조 (처리방법) 1. 불참횟수에 따라 지회장이 처리하고 회의체에 보고한다. 1) 5회(쟁의시4회) 불참 시 : 1차 경고장 발부 2) 7회(쟁의시5회) 불참 시 : 2차 경고장 발부 지회유인물(지회게시판, 홈페이지포함) (명단공개) 3) 9회(쟁의시6회) 불참 시 : 사유서 제출 및 지회에서 제공하는 선물, 경조비혜택과 피선거권을 1년간 제한한다. 4) 12회(쟁의시7회) 불참 시 : 지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정권이상의 징계로 처리한다. 2. 출석 확인 및 선별에 대한 권한은 지회장이 지명 한 자에게 있고 총괄은 지회장이 한다. 3. 제재조치를 당한 조합원이 제재결정이 통보된 날 로부터 7일 이내에 본인의 입장을 서면으로 지회에 제출 할 경우 지회운영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3'임투 쟁대위 투쟁지침 1호	불참자 처리세칙 6조에 의거하며 특별결의 한다. <u>2023년 10월 10일 부터 잔업 및 특근을 전면 거부한다.</u> ▶ 잔업 1회 실시 → 불참 1회 적용 ▶ 특근 1회 실시 → 불참 2회 적용				
불참내용	지침불참	① 6/5 23'단체교섭 요구안 설명회 ② 6/23 상반기 조합원 교육 ③ 9/18 23'임투 중식 결의대회 ④ 10/10 잔업 거부 ⑤ 10/11 잔업 거부 ⑥ 10/12 잔업 거부 ⑦ 10/13 잔업 거부 ⑧ 10/14 특근 거부 불참 2회 적용				
		불참 횟수 : 9회 (쟁의시 7회 포함)				
상기 조합원은 현대위이지회에서 불참자처리세칙 제6조 1항 2호에 의거하여 경고장 (1,2차)을 발부하며 지회 유인물, 지회 게시판, 지회 홈페이지에 명단 공개와 3호에 의거하여 사유서 제출 및 지회 제공 선물, 경조비 혜택, 피 선거권을 1년간 제한한다. ▶ 제한기간 : 2023. 10. 27. ~ 2024. 10. 26 (1년) 또한 4호에 의거하여 지부 운영위원회에 회부, 정권 이상의 징계로 처리한다.						



불참자처리세칙 위반 경고장 (2)차

발부일자	2023년 10월 27일					
발부대상	지역구 소 속	10지역구 구동생산 액슬조립2반	성 명	안병도	직책	조합원
경고적용	불참자처리세칙	제5조 (처리대상) 지회 회의 및 지회 회의체에서 결정된 교육과 각종 집회 및 쟁의행위 시 무단으로 불참한 자를 처리 대상으로 하며 행동지침 사항을 위반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며, 쟁의행위시와 일상기간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제6조 (처리방법) 1. 불참횟수에 따라 지회장이 처리하고 회의체에 보고한다. 1) 5회(쟁의시4회) 불참 시 : 1차 경고장 발부 2) 7회(쟁의시5회) 불참 시 : 2차 경고장 발부 지회유인물(지회게시판, 홈페이지포함) (명단공개) 3) 9회(쟁의시6회) 불참 시 : 사유서 제출 및 지회에서 제공하는 선물, 경조비혜택과 피선거권을 1년간 제한한다. 4) 12회(쟁의시7회) 불참 시 : 지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정권이상의 징계로 처리한다. 2. 출석 확인 및 선별에 대한 권한은 지회장이 지명 한 자에게 있고 총괄은 지회장이 한다. 3. 제재조치를 당한 조합원이 제재결정이 통보된 날 로부터 7일 이내에 본인의 입장을 서면으로 지회에 제출 할 경우 지회운영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3'임투 쟁대위 투쟁지침 1호	불참자 처리세칙 6조에 의거하며 특별결의 한다. <u>2023년 10월 10일 부터 잔업 및 특근을 전면 거부한다.</u> ▶ 잔업 1회 실시 → 불참 1회 적용 ▶ 특근 1회 실시 → 불참 2회 적용				
불참내용	지침불참	① 6/5 23'단체교섭 요구안 설명회 ② 6/15 23'임투 출정식 ③ 6/23 상반기 조합원 교육 ④ 9/18 23'임투 중식 결의대회 ⑤ 10/10 잔업 거부 ⑥ 10/11 잔업 거부 ⑦ 10/12 잔업 거부 ⑧ 10/13 잔업 거부 ⑨ 10/14 특근 거부 불참 2회 적용				
		불참 횟수 : 10회 (쟁의시 7회 포함)				
상기 조합원은 현대위아지회에서 불참자처리세칙 제6조 1항 2호에 의거하여 경고장 (1,2차)을 발부하며 지회 유인물, 지회 게시판, 지회 홈페이지에 명단 공개와 3호에 의거하여 사유서 제출 및 지회 제공 선물, 경조비 혜택, 피 선거권을 1년간 제한한다. ▶ 제한기간 : 2023. 10. 27. ~ 2024. 10. 26 (1년) 또한 4호에 의거하여 지부 운영위원회에 회부, 정권 이상의 징계로 처리한다.						



불참자처리세칙 위반 경고장 (1,2)차

발부일자	2023년 10월 27일					
발부대상	지역구 소 속	13지역구 구동생산 PTU가공3반	성 명	김호태	직책	조합원
경고적용	불참자처리세칙	제5조 (처리대상) 지회 회의 및 지회 회의체에서 결정된 교육과 각종 집회 및 쟁의행위 시 무단으로 불참한 자를 처리 대상으로 하며 행동지침 사항을 위반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며, 쟁의행위시와 일상기간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제6조 (처리방법) 1. 불참횟수에 따라 지회장이 처리하고 회의체에 보고한다. 1) 5회(쟁의시4회) 불참 시 : 1차 경고장 발부 2) 7회(쟁의시5회) 불참 시 : 2차 경고장 발부 지회유인물(지회게시판, 홈페이지포함) (명단공개) 3) 9회(쟁의시6회) 불참 시 : 사유서 제출 및 지회에서 제공하는 선물, 경조비혜택과 피선거권을 1년간 제한한다. 4) 12회(쟁의시7회) 불참 시 : 지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정권이상의 징계로 처리한다. 2. 출석 확인 및 선별에 대한 권한은 지회장이 지명 한 자에게 있고 총괄은 지회장이 한다. 3. 제재조치를 당한 조합원이 제재결정이 통보된 날 로부터 7일 이내에 본인의 입장을 서면으로 지회에 제출 할 경우 지회운영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3'임투 쟁대위 투쟁지침 1호	불참자 처리세칙 6조에 의거하며 특별결의 한다. <u>2023년 10월 10일 부터 잔업 및 특근을 전면 거부한다.</u> ▶ 잔업 1회 실시 → 불참 1회 적용 ▶ 특근 1회 실시 → 불참 2회 적용				
불참내용	지침불참	① 6/5 23'단체교섭 요구안 설명회 ② 6/15 23'임투 출정식 ③ 6/23 상반기 조합원 교육 ④ 9/18 23'임투 중식 결의대회 ⑤ 10/10 잔업 거부 ⑥ 10/11 잔업 거부 ⑦ 10/12 잔업 거부 ⑧ 10/13 잔업 거부 ⑨ 10/14 특근 거부 불참 2회 적용				
		불참 횟수 : 10회 (쟁의시 7회 포함)				
	상기 조합원은 현대위아지회에서 불참자처리세칙 제6조 1항 2호에 의거하여 경고장 (1,2차)을 발부하며 지회 유인물, 지회 게시판, 지회 홈페이지에 명단 공개와 3호에 의거하여 사유서 제출 및 지회 제공 선물, 경조비 혜택, 피 선거권을 1년간 제한한다. ▶ 제한기간 : 2023. 10. 27. ~ 2024. 10. 26 (1년) 또한 4호에 의거하여 지부 운영위원회에 회부, 정권 이상의 징계로 처리한다.					

현대위아지회 지회장 정 광 식



현대위아지회 지회장 정광식

